

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 예우 수당 인상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보훈 예우 수당 5만원 인상 : 월 5만원 → 월 10만원(안 제8조)
- 지급 연령 제한 폐지(안 제8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  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예우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<보훈 예우 수당>은 도내 기준으로 기존 하위권 수준에서 중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하고, 도내 13개 시군 및 인근의 김천시와 같이 지급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상향할 수 있음. 조례 개정예 상위법 위반 사항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.